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제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득한 후 협의내용의 조치결과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당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협의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간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요?

-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30일 이내

A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날 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 등으로서, 해당 개발기본계획의 확정, 승인 일자 등이 될 것입니다. 즉, 이건의 경우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후 30일 이내에 그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주유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주유 시설에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 부칙 제8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12. 12. 31일까지 A업체에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A업체(임차)에서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로써 회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업체(임차)로 대표자 및 상호가 2012. 8. 27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신설 : 시행일(2013. 5. 24)

상기 법조항이 신설되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자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휴발성유기화합물 설치 시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A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 유소는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12. 12. 31 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금년말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A업체(임차)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자 및 상호가 B업체(임차)로 변경되었다면, B업체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B업체는 금년말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량의 슬러지라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비용이 적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1~2년 계속 보관할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는 발생량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배출시설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 3)에 따라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장기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저수조 수질검사 관련 문의

저수조 수질검사를 1년에 1번씩 실시한다고 하는데 소방 용수 및 화장실 사용 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도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지요?

A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50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는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질의

최근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3(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과 관련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10,000\text{m}^3/\text{일}$ 이상의 정수장에서 공급받는 배수지에는 pH, 잔류염소, 수온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량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면서 지자체내 정수장이 없는 수도사업자의 배수지에도 위 법령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7호(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나항에 따라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text{m}^3/\text{일}$ 이상인 정수시설로부터 정수를 공급 받는 모든 배수지에는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Q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일반슬러지 처리는?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슬러지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슬러지는 분석해 봤을때 중금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00kg/월 정도 발생하는 아주